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8. 3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8.18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6.8.22.

다. 상정일자 :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6.8.30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의약과장 이주영

가. 제안이유

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체계적
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
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료 지원 조항

신설(제 12조의 2)

2)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사항 반영(제5조제2항제2호, 제7조제1항)

3)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표기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본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,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○ 서울시 정신보건지표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환자 중 전체 환자의 20.8%가 50대로 전체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, 자살률은 10만명 당 34.6명으로 전체 연령대의 20.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(55-63년생)의 자살률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음. 이와 같이 50대는 조기은퇴, 노후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지만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되고 있는바, 50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